

의안번호	2205286
의 퇴 인	곽규택 의원
회 답 일	2024. 11. 8.
추 계 번호	24F4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기업 포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대기업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현행) 중소기업, 중견기업 → (개정안)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적용기한: 2025.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 제25조의7은 문화산업전문회사¹⁾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1) 문화산업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동시에 해산하며 프로젝트의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 동 조항은 2023년 말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됨

[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기한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20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그러나 가용 정보가 미비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 곤란
 - 개정안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대기업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문화전문회사 출자액의 규모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부재함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에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2025년 감면실적이 추정곤란으로 제시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